



# 뉴스 포털의 전제 기사 관련 댓글에 대한 책임 범위

유럽인권재판소의 Delfi AS v. Estonia 판결에 대한 평석



김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1. 들어가면서

유럽인권재판소 합의부가 2013. 10. 10. Delfi AS v. Estonia(no. 64569/09) 사건에서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는 독자의 모욕적 댓글에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앞서 에스토니아 최대 인터넷뉴스 포털 사이트 Delfi AS사는 특정 선박 회사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이 기사에는 독자의 모욕적 댓글이 달렸다. 에스토니아 상급 법원은 이 댓글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Delfi AS사는 불복하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하지만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선고하였다. 그런데 2014. 1. 8. 청구인 Delfi AS사의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져 2014. 2. 17. 19명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Grand

Chamber)에 회부되어 2014. 7. 9. 공개 변론절차가 열린 뒤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모욕적인 독자의 댓글에 대해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최대 인터넷뉴스 포털 사이트 Delfi AS사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출처 : <http://www.delfi.lt/>)

2014. 7. 9. 공개 변론절차의 모습  
(출처: 유럽인권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echr.coe.int/Pages/home.aspx?p=hearings&w=6456909\_09072014&language=en&c=&py=2014])



## II. Delfi AS v. Estonia 사건의 사실 개요와 판결 요지

### 가. 사실 개요

발트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독일)은 많은 섬들을 가지고 있어, 그들 나라간은 물론 본토와 섬들간, 섬들간에는 선박으로 왕래하거나 여행을 한다. 페리호 선박회사 중의 하나인 에스토니아 SLK Ferries LLC가 2006년 에스토니아 본토와 몇 개 섬 사이에 겨울 일정기간만 운행하는 얼음 공용도로 인근에 새로이 페리 항로를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얼음도로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그 결과 얼음 공용도로의 개방시기가 몇 주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 내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 수준인 에스토니아의 인터넷뉴스 제공자인 포털 사이트 Delfi AS사는 위 페리 항로 개발 기사를 게재하면서 새로운 페리호 항로의 개발로 인하여 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기존 얼음 도로를 통한 각 섬들간의 이동수단이 파괴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인터넷 뉴스 기사 하단에 ‘댓글쓰기’란을 두고 댓글, 댓글 쓰는 사람의 성명, 이메일 주소(선택사항)를 쓰는 칸을 두고 있었다.

위 기사에 대하여 2006. 1. 24. 및 1. 25.에 185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 중 많은 댓글이 페리호 운전자와 선박회사 소유주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었는데 그 중 20여개는 SLK 선박회사의 대주주이고 임원인 L씨에 대한 개인적 헐박이나 모욕조의 말<sup>1)</sup>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독자들이 그 댓글에 접근할 수 있었다(위 포털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에 대한 댓글은 매일 1만 여 개 이상 거의 익명으로 올려지고 자동으로 업로드되며 포털사가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않았고 위

1)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선박회사가 페리항로를 개발하는 것은 이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돈벌레라는 등의 비난성 익명의 댓글이 있었다.



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 적대감과 폭력을 유발하는 내용, 음란 또는 저속한 표현이 있는 댓글에 대하여는 댓글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는 규정도 게시판에 언급하여 두고 있었다).

2006. 3. 9. L씨의 변호사가 위 포털 사이트에 위 모욕적 댓글 삭제 요청과 500,000크룬(약 32,000유로)의 배상 청구를 하였고, 포털 운영자는 바로 모욕적 댓글을 삭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L씨는 2006. 4. 13. 포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07. 6. 25.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하였고, 2007. 10. 22.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에서 재심리하여 댓글은 정당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모욕적인 것으로 L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포털 회사는 단순한 기술적, 자동적, 수동적인 뉴스 중개자라는 항변을 배척하고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5,000크룬(약 320유로)의 배상을 명하는 민사 책임이 인정되었고, 그 판결이 2008. 12. 16. 포털 회사 항소기각, 2009. 6. 10. 포털 회사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에스토니아 대법원이 포털 회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 요지는 ① 댓글란의 마련과 댓글의 수가 포털 방문자 수에 영향을 미쳐 포털 게시 광고에 따른 광고수입에 영향을 주는 등 댓글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점, 포털 회사가 댓글 게재 규칙을 제공하고 그에 위반된 댓글을 삭제할 수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이 올린 댓글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댓글에 대한 포털 회사의 통제권을 인정하고 프린트 매체인 출판사와 유사한 댓글 게시자로서의 성격 인정, ② 불법적인 댓글 게시 이후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즉각적인 삭제를 소홀히 한 관리 책임 인정 등이었다.

#### 나.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요지

이에 포털 사이트인 Delfi AS사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여 2013. 10. 10. 선고된 이 판결의 요지는 뉴스기사는 공익을 주제로 다룬 것으로 기사 내용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파적이지 아니며, 선박 회사의 관리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어지는 등 균형을 맞추고 있다. 다만 댓글은 명백하게 모욕적이고 협박적인 말을 포함한 불법적인 것인데, ① 포털사가 마련한 자동적 단어 필터링 시스템, 불법적 댓글에 대해 원클릭 통지 후 즉각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 등의 작동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② 대부분의 댓글이 익명으로 처리되는 등으로 신원 파악을 할 수 없어 댓글 작성자가 아닌 포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포털사는 댓글을 통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고 있어 그런 소송 제기가 합리적인 점, ③ 포털사의 책임액이 320유로로 소액이어서

그로 인한 언론 자유 제한의 정도가 비례성 원칙에 합치한 점 등을 들어 에스토니아 법원의 판단이 유럽인권규약 제10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sup>2)</sup>

### III. Delfi AS v. Estonia 판결에 대한 평가

#### 가. 우리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과의 비교 검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과 비교<sup>3)</sup> 하여 보면, 댓글에 관하여 그 책임 인정 요건과 범위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시각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

위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 확보와 확대 옹호론자를 중심으로 위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EU법으로 제정된 2000년의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

2) <http://www.article19.org/resources.php/resource/37287/en/european-court-strikes-serious-blow-to-free-speech-online#sthash.fkwT4YbJ.dpuf>

3) 다만 이 판결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



rective, ECD)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원칙적 불법행위 법적 책임 불인정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판결에는 이러한 법적 프레임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상의 표현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 있어 통지 후 삭제 시스템(Notice and Takedown, NTD)과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의 체계와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식조차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그 비판의 주요 요지를 좀 더 상술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포털 업체인 Delfi AS사가 불법적 댓글은 삭제한다고 고지하였고, 시스템에 의하여 인지하자마자 바로 그날 삭제한 것이므로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모욕적이거나 위법한 댓글의 공개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포털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포털사로 하여금 댓글의 불법적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한 간파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사적 단체의 정보에 대한 검열에 해당하는 바, 이는 사적 검열이 금지되는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위법하다. 한편 유엔 특별 조사위원(UN Special Rapporteur)은 통지 후 삭제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표현의 내용이 실제 불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제거되는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과도 어긋난다(통지 후 삭제 시스템은 2013년 영국의 명예훼손법 등 유럽 연합(EU)에서도 광범위하게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바, 위 판결은 이 점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 뉴스 중개자인 Delfi AS사가 저속하고 위법적인 단어를 자동적으로 검열하여 삭제하기 위한 인터넷 필터링 시스템이 피해자인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내린 결론도, 명예 훼손적 댓글이 6주간 공중에 의하여 접근되는 결과에만 중시한 나머지(이 또한 피해자가 그 실체를 Delfi AS사에게 신속히 아주 쉽게 통보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못한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자동 필터링만으로 명백한 위법성 댓글을 가려낼 수 없다는 점과 전반적인 사전 모니터링의 강요는 사실상 검열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임을 간과하는 등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sup>4)</sup>

위 판결은 인터넷 댓글로 인한 부작용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강조한 나머지 인터넷 뉴스 포털 업체로 하여금 감수하여야 할 상당한 비판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잘못이 있다. 나아가 공적 사항에 관한 인터넷 뉴스의 대부분이 당연히 공격적인 토론과 비판을 수반하는 것인데, 인터넷 포털 업체에게 통지 후 삭제 시스템 준수와 관계없이 잠재적인 불법 댓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미리 불법적 내용을

4) The Case of SABAM v Scarlet Extended, mentioned in the Court's judgment at para. 45

감지하여 제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전면적 사적 검열(All-out Private Censorship)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뉴스 사이트로 수입을 창출하는 인터넷 업체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지나친 요구이다. 강력한 온라인 인터넷 업체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위 판결의 의도는 이해되지만,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진입문으로서의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을 간과한 것으로 인터넷 뉴스 독자들의 댓글 내용과 광고수입 창출과의 연계성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비록 이 판결에서 Delfi AS사에게 명한 손해배상 액수가 아주 작지만, Delfi AS사가 고지 받은 뒤 바로 삭제한 이상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소액이라 하여도 책임을 지운 것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Online)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면, Delfi AS사에 표현의 자유 관련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고, 결국 위 판결은 온라인 정보 흐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지극히 근시안적인 것으로 보인다.

#### IV. Delfi AS v. Estonia 판결에 대재판부 최종 판결에 대한 전망

통지 후 삭제 시스템도 불법적이 아닌 내용의 과잉 규제나 삭제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그 시스템에 관하여 유럽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절차도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 온라인서비스 업체가 겪고 있는 법적 불안정의 정도가 큰 마당에, 포털사가 고지 받은 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댓글에 대하여 2차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정당해 보인다. 포털사에게 공적인 논란거리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인격권을 더 보장하여 적극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2013년 영국의 명예훼손법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기존 판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위에서 본 위 판결에 관한 비판의 논거가 타당하고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어 대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